연금계좌 세제 이렇게 달라진다

글 · 현명훈 선임연구원

지난 8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연금세제는 연금계좌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필요한 노후자금을 가능한 많이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등 연금계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수록 절세와 함께 노후소득이 많아지도록 세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금세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에 의료비를 인출할 때나 천 재지변,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에는 저율의 연 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 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연금계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추가로 3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저축 계좌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퇴직연금계좌에만 적용됩니다. 가령, 연금저축계좌에만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표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변화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과 퇴직연금계좌	한도 300만 원 추가 ▶ 연금저축계좌에만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는
납입금을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	400만 원까지만 가능

※ 적용 시기 : 201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2014. 8. 6)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개별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를 일률적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 8천 원을 낸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퇴직연금계좌만의세액공제가 추기됨으로써 최대 39만 6천 원(300만 원 × 13,2%)을 더 절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O(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해서 자기 부 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DC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DC 가입자만이 가능하며, IRP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DC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 계좌를 설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표2] 납입 사례별 세액공제 금액

(단위: 만 원)

연금저축 납입금	퇴직연금 납입금	총납입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은?
0	700	700	700
300	400		700
400	300		700
700	0		400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때보다 세금 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3.3% ~ 5.5%) 중 3.3%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실효세율이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일부 고액 퇴직자 외에는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더 유리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비해세부담이 30% 줄게끔 과세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표3] 퇴직금의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 연간 연금 수령액이 분리과세 기준금액 (1,200만 원) 이하: 3,3%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세액 절감)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이연 = 퇴직 X 선금 수령액 이연퇴직소득 및 이연퇴직소득시 연금제좌로 입금되면서 퇴직소독세가 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등과 해당 퇴직소등세

※ 적용 시기: 2015. 1. 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

의료 목적의 인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의료 목적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3.3%~ 5.5%)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세율 6.6%~41.8%)하게 되어 세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표4] 의료 목적의 인출금 과세 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세울 3,3% ~ 5,5%)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세울 6,6% ~ 41,8%)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연간 수령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세율 3.3% ~ 5.5%)

※ 적용 시기: 2015. 1. 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 로 분리과세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13.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연금계좌 취급자(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등

* 부앙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그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세부 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5]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금 과세 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세율 13.2% 적용)	(세율 3.3% ~ 5.5% 적용)

※ 적용 시기: 2015. 1. 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면 항상 분리과세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중도해지 등)하면 기타소득(16.5%의 세율 적용)으로 분리과세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연간 수령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도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납입금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를 받은 후 중도해지하여 인출하게 되면 16.5%로 과세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友

[표6] 연금 외 수령액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 수령액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세율 16.5%)으로 분리과세 (원할 경우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수령액 연간 3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합신과세(세율 6.6% ~ 41.8%)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 수령액 상관없이 항상 분리과세 (세율 16.5%)

※ 적용 시기: 2015. 1. 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2014년 세법 개정안